보 도 설 명 자 료
('21. 12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RCEP 최종 서명 이후 비준을 위한 법률상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음

(12.1일자 중앙 「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, 한국 '관세 왕따' 됐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---

1. 기사내용

□ RCEP 타결(19년)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늦어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RCEP이 최종 타결 및 서명된 **20.11월 이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**됨.

* 19.11월에는 협정문만 타결되어, 시장개방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국내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

□ 정부는 최종 서명 이후 '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'에 따라 **국내절차***를 꼼꼼하고 충실하게 이행한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(21.10.1일)

* 1) 영향평가결과, 2)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3) 국내산업 보완대책, 4)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

○ RCEP은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로 영향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고, **양허안 및 협정문 분량도 방대**하여, 관련 연구 분석 및 번역 등에 **많은 시간이 소요**됨

○ 특히, 정부는 영향평가에 따른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였고,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, **'22년 및 중장기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** 시간이 다소 소요됨

□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준동의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, **홍보 및 활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.**

* RCEP 발효는 기탁후 60일 이후이며, 동 발효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후 다시 설명드리겠음.

※ 문의: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전동욱 과장(02-2100-1373) / 이지현 사무관(1376)